

24.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미래공간개발본부장)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
 -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년 11월 24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충한 미래공간개발본부장)

□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변경(안 제6조)
- 나.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14조)

□ 참고자료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조례안 참조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등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9. 21. ~ 2020. 10. 1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
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5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(조례안 참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진성)

□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

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안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부시장” 을 “경제부시장” 으로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·자치행정국장·도시재창조국장·건설본부장” 을 “기획조정실장·도시재창조국장·미래공간개발본부장·건설본부장” 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있으며, 조례 개정애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